(15-020) ○○동 오피스텔 외벽 강관비계 붕괴사고

공사명	○○동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			
사고일시	2015년 11월 13일(금) 21:48분경		기상상태	비
소재지	인천시 남동구 구월동	사고 종류	파단	
구조물 손실	_	인적피해	-	
장비 손실	_	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	해당(),	해당없음(○)

① 공사개요

o 공사종류: 업무시설(공동주택 및 오피스텔)

o 연면적: 2,170m²

o 규모: 지하 1층/지상 14층

사고개요

② 사고경위

o 외벽에 설치된 강관비계가 자체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지상 3층 부분부터 지상 8층까지의 외벽 강관비계가 좌굴되어 외측으로 튀어 나옴(약 5m).

③ 사고원인

o 강관비계의 벽 연결재를 수직/수평 각각 5m 이하마다 건물벽체에 설치 하여 고정하여하나 공사 마무리를 위해 사전 제거하였으며, 분진비산방지를 위해 비계에 설치한 부직포가 비에 젖어 비계가 자중 및 부직포하중으로 이기지 못하고 좌굴됨.

o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·

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.

o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,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.

재발방지 대책

- o 비계 조립 전에 구조, 강도,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,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- o 비계 및 작업 발판은 공사의 종류, 규모,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.
- o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,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.
- o 작업 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,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.



사고현장 위치도



사고 사진

사고현장 전경



사고 사진

사고현장



사고 사진

사고현장